

企業活動 規制緩和를 위한 基本方向

全經聯은 그동안 民間企業의 創意性과 能率性을 提高시키고 經營活動을 보다 活性化하기 위해 제반 企業規制 관련 法令 및 制度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그 일부로 지난 6月 政府에 「企業活動 규제완화를 위한 基本方向」을 건의하였다. 이 가운데서 電子業界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한다. 業體의 業務에 참고하기 바란다.

(編輯者註)

| 題 目 | 現 行 | 問 題 點 | 改 善 方 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
| 1) 準工業地域内の工場 新增設 制限緩和 | <p>○81. 12. 21 産業活動 促進目的으로 工業配置法 施行令 改正하여 制限整備地域안이라 하더라도 都市計画法上 工業地域안이라면 工場의 新增設이 可能토록 規制를 緩和한 바 있음. (工業配置法 第13條 第1項, 同法 施行令 第20條)</p> <p>○環境保全法 規定에 의해 公害排出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아야 하는 工場은 準工業 地域안에서 新增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. (建築法 施行令 別表7)</p> | <p>○産業活動 促進을 위해 工業配置法 施行令을 개정하면서 同一한 事項에 대한 建築法 施行令上의 規制는 存置됨으로써 工業配置法 施行令 改正의 趣旨를 살리지 못하고 工場 新增設 制限은 계속 되고 있음.</p> <p>○現行 建築法 施行令上의 規制는 工場의 公害排出量이 環境保全法上 排出許容基準 이하인데도 이를 포괄적으로 公害工場으로 간주, 新增設을 制限함으로써 産業活動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임.</p> | <p>既存工場으로서 公害防止施設을 保有하고 있고 公害物質排出量이 環境保健법상 排出許容基準이하인 경우에는 制限整備地域内 準工業地域에서도 工場新增設이 許容되도록 制限을 緩和할 것임.</p> |
| 2) 滿18세 미만자에 대한 就業禁止 規制緩和 | <p>18세 未滿者는 道德上 保健上 有害, 危險한 56個 職種 事業體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. (勤勞基準法 第51條, 第109條, 同法施行令 第43條)</p> | <p>○56個 취업금지 직종의 範圍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企業體에서는 18세 미만자에 대한 취업을 회피하고 있는 實情임.</p> <p>○통상 中卒年齡이 15세~16세 임에 비추어 16세, 17세 해당 中卒就業希望者의 就業이 實質적으로 크게 制限됨으로써 生計</p> | <p>現 18세 미만자에 대한 취업금지 직종의 範圍를 보다 細分化, 縮小調整하고 職種別 有害 危險度의 差異를 감안 有害 危險度가 相對적으로 낮은 職種은 취업금지 年齡을 現 18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引下調整토록 할 것임.</p> |

| 題 目 | 現 行 | 問 題 點 | 改 善 方 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<p>3) 技術導入契約 認可制 運用改善</p> | <p>○技術導入契約期間 또는 代價의 支拂期間이 10年을 초과하거나 經常技術料가 당해 技術導入契約에 의해 生産되는 製品 純賣出額의 10%를 超過하는 技術導入 契約이외의 모든 技術導入 契約에 대하여는 소정의 審査없이 즉시 認可할 수 있도록 自由化된 바 있음. (外資導入法 施行令 第 5條 第 3項 80. 7. 7改 正된바 있음)</p> <p>○技術導入契約內容이 현저한 不公正 또는 輸出制限條件등 制限的 內容을 포함하는 경우 등은 認可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. (同法 施行令 第 5條 第 4項)</p> <p>○上記 技術導入契約의 認可 및 그 認可 範圍안에서 內容變更의 認可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권한이 위탁되어 있음. (同法 施行令 第 29條 第 1項 7號)</p> | <p>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技術人力의 早期養成을 沮害함.</p> <p>○認可業務를 經濟企劃院으로부터 위탁받은 주무부는 技術導入自由化 借置의 취지와는 달리 長期間의 복잡한 審査를 거쳐 認可함으로써 自由化 措置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음. (중전인가소요기간 1~2個月에 비해 현재인가소요기간 1.5個月 이상)</p> <p>○技術導入契約상의 不公正條項 등의 審査를 주무부와 經濟企劃院(公正去來室)에서 2重으로 함으로써 不必要한 時間과 人力을 허비하며 인가기간을 遲延시키고 있음.</p> | <p>○실제적으로 技術導入自由化 措置가 施行되도록 과감한 행정지침의 樹立 및 運用이 必要하며 技術導入의 適合性 與否는 國際化 時代의 흐름에 맞추어 民間企業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 것임.</p> <p>○經濟企劃院의 不公正條項 등의 審査는 어차 「國際契約上의 不公正去來行為 및 부당한 共同行為의 範圍 및 基準」(EPB고시)에 의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 주무부 檢討時 이를 準用토록 함으로써 「經濟企劃院에의 意見照會·回信」에 소요되는 認可期間을 단축토록 할 것임.</p> |
| <p>4) 先物換去來 證據金制의 改善</p> | <p>○先物換去來時 고객의 契約不履行의 境遇 發生할 수 있는 外國換銀行의 損害에 대한 債權保全措置로 證據金を 預置토록 하고 있음.</p> | <p>○證據金を 現金으로만 預置토록 하고 있어 顧客에 資金負擔을 주고 있으며 先物換去來의 活用을 저해하고 있음.</p> | <p>○證據金으로 預置할 수 있는 項目에 國公債, 上場有價證券, 金融機關支給保證書, 保證保險證券이 포함되도록 運營指針에 明示토록 할 것임.</p> |

| 題 目 | 現 行 | 問 題 點 | 改 善 方 案 |
|---|--|--|--|
| <p>2) 從業員의 福利厚生施設 및 諸般附隨施設에 該當하는 土地를 業務用으로 認定</p> | <p>(外換市場 運營協議會 運營指針)</p> <p>○法人이 從業員의 住居用에 供하기 위하여 私宅 寄宿舍, 合宿所 등의 建築物을 所有한 경우의 그 附屬土地는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서 除外하되 다만, 當該土地가 建築面積의 7倍를 超過하는 部門은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 該當되어 財産稅 重課稅함. (地方稅法 第188條 및 同 施行規則 第75條의 2 第 1號)</p> | <p>○建築面積의 7倍에 該當하는 面積만 非業務用土地에서 除外하고, 從業員의 福利厚生施設인 테니스장, 어린이놀이터 및 제반부수기반시설(道路 및 道路의 측구시설 등)을 감안하지 아니하고, 7倍를 超過하는 面積 全部를 非業務用土地로 보아 重課稅함은 不當함.</p> <p>○또한 法人稅法에서는 法人의 業務와 關聯없는 土地의 範圍를 地上定着物 面積의 10倍를 超過하는 土地로 規定하고 있으므로 地方稅法도 國稅法인 法人稅法과 衡平되어 야 함. (法人稅法施行令 第30條 第1號 및 同基本通則 2-9-8……16)</p> | <p>○從業員의 福利厚生施設 및 諸般 附隨基盤 施設에 該當하는 土地는 奢侈性 財産도 아니며, 不動産投機의 目的도 아니므로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에서 除外할 것임.</p> |

